



-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2021. 6.



홍복조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홍복조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와 제9조는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끝으로, 안 제11조와 제13조는 복지시설의 확충 등,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1년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달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홍복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00821053

발의일자: 2021. 5. 6.

발의자: 홍복조, 박정환, 안대국, 박왕규,
김화덕, 이신자, 김태형, 배지훈

1. 제안이유

달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안 제3조, 안 제4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라. 지원사업(안 제7조)
- 마.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안 제8조, 안 제9조)
- 바.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안 제10조)
- 사. 복지시설의 확충 등(안 제11조)
- 아. 사무의 위탁(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 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

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권리보장에 관한사항
 4.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4.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돋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위해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사업의 보조)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홍보)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구

민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